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6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2023 3. 1.자 조직개편을 위한 일반직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(안 제4조 관련 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조정: 총계 변동 없음
  - 4·5급 정원 감원: 감 2명 (9명 → 7명)
    - 교육지원청 4·5급 정원 감원: 감 2명 (2명 → 0명)
  - 4급 정원 증원: 증 2명 (40명 → 42명)
    - 본청(직속기관 포함) 4급 정원 증원: 증 2명 (29명 → 31명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(별첨 6)

-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 2)

다. 협의 :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(별첨 1)

- 입법예고(2022. 9. 21. ~ 10. 10.) : 의견없음(별첨 3)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통보 확인서(별첨 4)
- 학생인권영향평가 : 검토 의견서(별첨 5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학교
<b>총계</b>	<b>7,722</b>				
<b>정무직 계</b>	<b>1</b>				
교육감	1		1		
<b>일반직 계</b>	<b>7,125</b>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42		31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2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
연구사 소계	14				
<b>별정직 계</b>	<b>8</b>				
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<b>특정직 계</b>	<b>588</b>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537				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	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교육 지원청	공립의 각급 학교
총 계	7,722					총 계	7,722				
정무직 계	1					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	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7,125					일반직 계	7,125				
2·3급	1		1			2·3급	1		1		
3급	9		9			3급	9		9		
3·4급	3		3			3·4급	3		3		
4급	40		29	11		4급	42		31	11	
4·5급	9		7	2		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7,042					5급 이하 소계	7,042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				전문경력관 소계	7				
연구사 소계	14					연구사 소계	14				
별정직 계	8					별정직 계	8				
4급상당	1		1			4급상당	1		1		
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7				
특정직 계	588					특정직 계	588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1		29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537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537				

**【별첨 2】**

**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이 조례(안)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2명의 단위기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임

**4. 작성자**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행정6급 한보석 (02-3999-356)

【별첨 3】

< 별지 제5호 서식 >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의견없음	

【별첨 4】

<b>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</b>				
관리번호	2022A서울교육015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행정관리담당관		
	담당자명	한보석	전화번호	02-3999-356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민주시민생활교육과		
	담당자명	박정원	전화번호	02-399-9546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2년 09월 21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2년 10월 03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10월 03일</p>				

【별첨 5】

**자치법규 · 단위사업  
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**

자치법규 (단위사업)	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		
담당부서	행정관리담당관	담당자	직급	주무관 (교육행정6급)	성명	한보석
평가담당	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	고태훈, 공율, 권정우, 김희진, 노희창, 송지은				
해당조항	검토의견				검토결과	
-	-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항 없음 의견임.				원안동의 (권고사항 없음)	

## 관계법규

### 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5조의2(정원 책정의 승인)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(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정원을 책정하려는

경우(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본청의 과장·담당관(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2.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
3. 직속기관의 부서장(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) 이상

**제2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3.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

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